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준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1

발의연월일: 2024. 6. 18.

발 의 자:김준형 · 권칠승 · 차규근

이재강 • 한정애 • 박은정

신장식 • 이해민 • 서왕진

강경숙 · 김선민 · 고민정

정춘생 • 박지원 • 김재원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부임시킨 바 있음.

이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특임공 관장 임명권을 남용한 사례로,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의 실체적 진 실 규명을 지체시켰고 대외적으로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초래하였 음.

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 당사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하여 수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다시 발생 할 수 있음.

이에 '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기소 및 수사 중에 있는 자'는

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특임공관장 임명권 남용을 방지하고, '헌법, 국가보안법, 중대재해처벌법,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감사원, 검찰,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조사나 수사 중인 자'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한 사항의범죄에 연루된 자의 임명을 방지하는 것임(안 제4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특임공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될 수 없다.
- 1.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감사원, 검찰, 경찰 및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임명 시 조사 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
- 2. 「대한민국헌법」, 「국가보안법」,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공직자윤리법」에 위배되는 행위로 감사원, 검찰,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임명 시 조사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
- 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특임공관장) ① ~ ④ (생	제4조(특임공관장) ① ~ ④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특임공관장이 다음 각 호의
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
	명될 수 없다.
	1.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
	로 감사원, 검찰, 경찰 및 고
	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
	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
	자로 임명 시 조사나 수사에
	방해가 될 수 있는 자
	2. 「대한민국헌법」, 「국가보
	안법」, 「중대재해 처벌 등
	에 관한 법률」, 「공직자윤
	리법」에 위배되는 행위로 감
	사원, 검찰, 경찰 및 고위공직
	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
	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임
	명 시 조사나 수사에 방해가
	될 수 있는 자
	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에
	따라 출국이 금지된 자